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90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박상웅 · 김미애 · 박덕흠
윤한홍 · 박정하 · 김위상
박형수 · 강대식 · 이인선
이상희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 책임성 ·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⑦ ~ ⑨ (생략)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 ----- ----- ----- ----- ----- <u>다만, 위원 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 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저 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⑦ ~ ⑨ (현행과 같음)